

의안번호	제3063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발의자	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6. 3. 6.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허욱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3
----------	------

발의연월일: 2026. 3. 6.

발 의 자: 허욱희, 우정욱, 최두임,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이정숙 의원(8인)

1. 제안이유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독서율 제고 및 지역 사회 문화 발전과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대행 등(안 제6조)
- 바. 고성군 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지원(안 제7조)
- 사.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안 제8조)
- 아.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9조)
- 자.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2026년 당초예산 편성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5호

- 예고기간: 2026. 3. 6.(금) ~ 3. 12.(목)[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지역서점”이란 고성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는 서점을 말한다.

③ “지역출판물”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발간한 도서 및 자료 또는 고성의 역사·문화·인물 등을 소재로 하여 발간된 도서 및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

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독서자료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독서환경 개선,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국가 및 경상남도의 독서문화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도서 구입과 연계하여 독서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8.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무협의체의 대행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도서관·문화예술·평생학습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설치 시 위원 구성과 임기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독서의 달과 연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및 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단체에 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법에 따른 독서의 달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제8조(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군수는 지역서점과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3.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4. 지역 출판물의 제작 지원 및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1. 재정수반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안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안 제7조(독서의 달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안 제8조(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안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소요예산: 총 78,500천원
 - 안 제5조: 연령별·대상별 독서 프로그램 등 18,200천원(연간), 벗꽃 한마당 및 기념행사 40,000천원(한시적 기금 사업)
 - 안 제7조: 독서의 달 프로그램 등 3,000천원(연간)
 - 안 제8조: 지역서점 연계 도서 구입 20,000천원(연간)
 - 안 제9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최 다 원

관 계 법 령(발췌)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